#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45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최민희·정동영·이정헌

김남근 • 이연희 • 이재정

권향엽 · 황정아 · 양부남

조인철 · 임미애 · 황명선

김 윤・김 현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사형광고'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서도 기사형광고가 관행화되어 있음. 공공기관의 동정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기사와 기관장을 홍보하는 인터뷰가 광고 표시 없이 기사로 보도되면서 독자를 눈속임하는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또한 한 해에 1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정부광고 비용으로 사용되면서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근거를 마련해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 등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의2 신설).

아울러 현행법에서 일부 협찬을 정부광고에서 예외로 운영할 수 있 도록 하면서 불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협찬 이 악용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유료로 집행되는 협찬은 정부광고에 해당되도록 하는 등 기준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제9조제1항).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짐과 동 시에 정부기관등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을 근절시킬 수 있으며 언론 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고 등"을 "공고 등(이하 "광고등"이라 한다)"으로, "행위를"을 "행위와 광고등을 목적으로 홍보매체의 제작을 유료로 지 원하는 협찬을"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를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한 정부광고 이외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을 "광고등의 목적이 아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정부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와 시청자, 청취자 등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항에 따른 적합한 표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까지에"를 "제8조까지와 제14조의2에"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공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정부광고의 집행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1. 제목 및 목적
  - 2. 금액 및 기간
  - 3. 홍보매체의 명칭 및 광고의 위치(해당 지면, 방송프로그램명, 인터넷주소 등을 포함한다)
  - 4. 의뢰 정부기관등의 명칭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때에는 개별 정부기관등과 홍보매체별로 구체적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유사 정부광고를 의뢰하거나 게재한 자
  -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 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 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 공고 등(이하 "광고등"이라 한 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행위와 광고등을 목적으로 홍보매체의 제작을 유료로 지 원하는 협찬을-----.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 고 금지 등) 정부기관등은 정 고 금지 등) ① -----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 관에게 요청한 정부광고 이외에 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광고등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 목적이 아닌-----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설>

2	모듼	= 7	형태의	의	정부	광고	<u>L</u> 에	는
정.	부광.	고료	.가	지-	급된	入	ŀ실	을
<u>독</u>	자와	시:	청자,	청	취자	등	ာ	명
<u>확</u>	하게	인.	식할	수	있도	三록	적	합
<u>한</u>	張入	를	하여	야	한디	<u>-</u> .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항에 따른 적합한 표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1
제8조까지와 제14조의2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공개)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부광고의 집행내역 을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1. 제목 및 목적
- 2. 금액 및 기간
- 3. 홍보매체의 명칭 및 광고의 위치(해당 지면, 방송프로그

램명, 인터넷주소 등을 포함 한다) 4. 의뢰 정부기관등의 명칭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때에는 개별 정부기 관등과 홍보매체별로 구체적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신</u>설> 제1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유사 정부광고를 의뢰하거나 게재 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 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